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효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5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효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동욱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이상욱,
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
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
황철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,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기존에는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학생 지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정신건강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(제7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학교보건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7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-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
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
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② <u>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 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의 제목을 수정(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→ 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·운영)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,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(민주시민교육과 상담마음건강팀)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